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

농림부는 지난 22일 가축의 소유주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는 동시에 가축방역관의 검사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보완하였다.

- 다 음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폐사한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한 가축의 태이의 경우·검사 등의 실시 당시 당해 가축 및 가축태이의 평가액의 5분의 4

2.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살

처분 당시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전액

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이나 나타나기 전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나.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1)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 유지

(2)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 등의 설치

(3) 축사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 등 가축방역관의 검사 업무수행에의 협조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이동제한·격리 등의 명령과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 등의 이행

3.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살처분 당시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5분의 4

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나.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제2호나목의 4개조치중 동목의 (4)를 포함한 3개조치를 이행한 경우

4. 법 제9조의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살처분 당시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5분의 3

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나.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제2호나목의 4개조치중 동목의 (4)를 포함한 2개조치를 이행한 경우

5.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살처분 당시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5분의 2

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고의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체하거나 하지 아니하며 가축방역관이 해당가축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경우

나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들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제2호나목의 4개조치중 1개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 당해 물건평가액의 5분의 2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 종류별 가축평가액의 산정기준 기타 가축 등의 평가에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상금지급기준중 2개이상의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상금은 최고보상액과 최저보상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검사 등의 실시로 인하여 가축이 폐사하거나 가축의 태아가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와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의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96가축질병병성감정실적

농림부는 주요가축전염병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수의과대학 및 동물약품(사료)업체를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의거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 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 양축농가가 가축질병을 쉽게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작년 한해동안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실시한 '96 병성감정 실적은 총 16,828건이며, 기관별 병성감정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수의과학연구소 : 2,132건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농축산사업소 및 축산진흥원) : 8,434건
 서울(42), 부산(80), 대구(49), 인천(160), 대전(34), 광주(113), 경기(936), 강원(541), 충북(1,249), 충남(1,053), 전북(772), 전남(1,453), 경북(621), 경남(1,037), 제주(294)
- 병성감정지정기관 : 6,262건
 미원축산(1,168), 바이엘코리아(1,340), 중앙가축(799), 제일사료(975), 대한제당(337), 한국미생물(535), 제일제당(1,108)

축산물 가공업무 농림부로 일원화

행정쇄신위원회는 2월 28일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행정쇄신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행정쇄신위는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는 행정쇄신계를 결정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육류의 가공, 운송, 판매와 시유 및 유제품의 생산과 판매업무를 올해 축산물위생처리법과 식품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농림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행정쇄신 계획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위생관련 기준을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통해 제정고시

하고 축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등 제반 행정업무와 위생검사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축산물처리장 7개소 추가신설

농림부는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 7개소를 추가신설키로 하고 사업대상자를 지난 19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승산업, 하이미트, 박달재 한우마을, 푸른육원, 거평유통, 명신산업, 거창축협 등 7개업체이다.

이들 7개업체들에 대해선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개소당 1백20억9천1백만원, 중소기업자는 63억2천만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이미 5개소가 연말 가동을 목표로 건설중이며 오는 2천년까지 7개소가 추가로 완공되면 총 12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수의과학연구소

병원미생물신속검출기법세미나 개최



수의과학연구소(소장 이재진)는 지난 10일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소 대강당에서 최근 HACCP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미생물의 신속한 검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 박용호교수가 'HACCP 식품안전 위해 병원 미생물'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 미생물의 종류와 검사 및 특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미국 FDA미생물 검사소 대장균실의 Peter Feng박사는 '미국에서의 병원성 대장균 O-157 : H7 감염의 위해성과 최근 발생요인 규명 연구'에 관하여 소개를 했고, 수의과학연구소 정석찬 박사는 'E. coli O-157 H:7의 최신 검출기법'에 대하여 소개했다.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전화번호 변경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부장 정선부)는 구내·외 원활한 전화통화를 위해 D.I.D(주선 전용) 회선을 구축, 지난 7일자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 종축개량부 대표전화 (0417)580-3300
- 종축개량부장실 직통 581-0434
- 종축개량부 (0417)580-3326
- 중소가축과 과장실 580-3400
- 종계사 580-3409
- 종계사 현장 580-3410

한국농업전문학교 개교·입학식

한국농업전문학교(교장 최민호)는 지난 20일

정시채 농림부장관, 김동태 농촌진흥청장, 이우재 의원, 원철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5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 및 제1회 신입생입학식을 가졌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분뇨 홍보 리후렛 제작·배부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지난 15일 가축분뇨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과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코자 리후렛을 제작·배포했다.

리후렛의 내용은 가축분뇨를 이용하면 좋은 점과 가축분뇨 이용 방안을 설명했다.

농변·농민단체 연석회의 개최

농민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농변, 회장 송기방)은 지난 30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호산법률사무소에서 농민단체와의 합동회의를 갖고 농민의 법률적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농변 활동이 보다 농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적극적인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 농민단체와의 연대활동으로 전국 시·군 단위까지 연대가 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 공동으로 농업관련 법전 발간사업과 법률개정 작업추진, 농민이 관여된 소송대리 활동, 무료 법률 상담, 전문지 및 PC를 통한 농민법률 상담 등 활동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농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시·군별로 농민대변 변호사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4월중 가칭 농업법률조정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또한 농변과 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 회장 강춘성)는 이를 위해 전국의 변호사 조직과 농민단체 조직을 최대한 가동하여 농민의 법률적 권익대변이 이루어 지도록 활동키로 했다.

'97 아메리칸식품전 개최

미국농업무역관(관장 Philip A Shell)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호텔신라에서 미국농우성 해외농업청과 공동주최로 '97 아메리칸식품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무역, 유통, 식품제조, 호텔 및 요식업체 등 식품업계에 교역알선과 정보교환의 장이 되었고 또한, 미국 현지의 70개업체가 참가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최상의 식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